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개요 및 일정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A-19(1)BL
- 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 지상 25층 24개동 / 총 2,038세대

▶ 일정 계획 (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8. 04. 04(수)	-
• 주택전시관개관	2018. 04. 06(금)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6-11
• 접수일자	2018. 04. 09(월)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2018. 04. 09(월)	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 동호수 발표	2018. 04. 17(화)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

※ 위 일정은 업무 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의사상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철거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1호(철거민),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7호(의사상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에 해당하는 자 중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율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철거민은 제외)<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특별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1호(철거민),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7호(의사상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주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p>※ 추천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②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복지사업운영과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④ 중소기업 정기근속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⑤ 철거민 : LH양주사업본부 ⑥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⑦ 납북피해자 : 통일부 정책지원과 ⑧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⑨ 우수기능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속련기술총괄팀 ⑩ 의사상자 :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⑪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 - 추첨 대상은 해당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전체임.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 선정하며,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청약 예치금액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총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당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청약 접수 시 무주택서류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상이하고,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납부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시

▶ 신청시 구비서류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청일에 신청장소(주택전시관)에 비치
청약통장가입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약통장 가입은행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의사상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인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별공급 신청용 1통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감증명서 날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0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3자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분양상담실)에 비치]
신청자 인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별공급 신청 위임용 1통
신청자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감증명서 날인
대리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0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8. 04. 09(월)예정]에 견본주택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6-11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 주택전시관)에서 신청 접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불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미계약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8. 04. 04(수)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홍보물을 통하여 다시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04. 04(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 특별공급 배정세대 및 추천 양식

▶ 특별공급 기관추천 배정세대수 인천시 장애인 배정 10세대

구분	66	67	74A	74B	84
일반(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1	-	2	1	6